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(단위: 만원)		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위반	5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56조 제4항제1호	10	30	50	70	100
나.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2호	100	300	500	700	1,000

다. 법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6조 제3항제1호	100	150	200	250	300
라.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6조 제2항제1호	100	200	300	400	500
마.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6조 제3항제2호	100	150	200	250	300
바. 법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·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2	100	300	500	700	1,000
사.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3	100	300	500	700	1,000
아. 종자업자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4	100	300	500	700	1,000
자. 종자판매자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56조 제2항제2호	100	200	300	400	500
차. 법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5	100	300	500	700	1,000
카.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6조 제4항제2호	10	30	50	70	100
타. 법 제43조를 위반하여	법 제56조	100	300	500	700	1,000

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	제1항제3호					
파.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·보관한 경우	법 제56조 제4항제3호	10	30	50	70	100
하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, 조사·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4호	100	300	500	700	1,000
거.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,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56조 제1항제5호	100	300	500	700	1,000